

	<h1>계절학기운영규정</h1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3. 4.
		최종개정일자	2018.11.15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설 및 공고)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, 교과목 선정, 기간, 등록절차, 수강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 2주일 전에 공고한다.

제3조(수강대상)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전공(교양)교과 학점 미 취득자
2. 정규교과를 이수하더라도 졸업학점이 부족한 자
3. 기 취득한 성적이 불량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자
4. 기타 학점취득 희망자

제4조(수업시간) 강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총학기의 3/4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한다.

제5조(개설과목) 개설교과목은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미만으로도 개설할 수 있다.

제6조(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) 수강신청은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,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 개시 1주일 전까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졸업학년도 마지막 학기에는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제7조(수강료 산출)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계열별로 책정하고 학점 단위로 징수한다.

제8조(성적평가) 계절학기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다.

1. 계절학기 성적은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수하되, 성적은 89점(B+)을 초과할 수 없다.
2. 편입생이 정규학기에 이수 할 수 없는 교과목을 계절학기로 수강할 경우 예외로 정규학과 같이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.<제정 2018.11.15>
3.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당해 학년도 일반학기에 합산하지 않고 학년 성적 평점 평균에 합산하며, 학사경고, 장학생 선발시 포함되지 않는다.

제9조(기타) 계절학기 운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